

편집자 주

위원회는 ADR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관련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 ADR관련 법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호에는 미국의 '표준조정법'을 게재한다.

표준조정법 (UNIFORM MEDIATION ACT)

미국은 각 주에 광범위한 독자적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소송, 분쟁 당사자가 한 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주 간 문제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국 ULC(U.S. Uniform Law Commission)에서는 각 분야의 통일된 입법을 위해 'Uniform Act' 라는 모델법을 기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준조정법은 ULC가 기안한 조정 관련 모델법이다.

제1조(명칭)

이 법의 명칭은 표준조정법이라 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정”이란 조정자가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및 협상을 도모하여 당사자들의 분쟁과 관련하여 자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조정 진술”이란 조정 과정 혹은 조정의 검토, 시행, 참여, 착수, 지속, 재개 또는 조정자 보유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루어진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진술을 의미한다.

(3) “조정자”란 조정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4) “비당사자 참여자”는 당사자 혹은 조정자 외에

조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5) “조정 당사자”는 조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조정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6) “주체”란 개인, 기업, 사업신탁, 재산, 신탁, 파트너십, 유한회사, 협회, 합작회사, 정부, 정부산하기관, 대행업체, 중개업체, 공기업 혹은 기타 법적, 상업적 주체를 의미한다.

(7) “절차”란

(A) 관련 사전심리, 사후심리, 협의, 증거개시를 포함한 사법, 행정, 중재 혹은 기타 심판 과정, 또는

(B) 입법상 심리 혹은 이와 유사한 과정을 의미한다.

(8) “기록”이란 유형 매체에 기입된, 혹은 전자적 매

체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판독 가능한 형태로 회수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9) “서명”이란

(A)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현재 의도를 가지고 유형의 기호를 만들거나 채택하는 것, 혹은

(B) 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현재 의도를 가지고 전자적 기호, 소리, 혹은 과정을 기록에 첨부하거나 기록과 적절히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범위)

(a) (b) 또는 (c)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은 다음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정에 적용된다.

(1) 조정 당사자들이 법령 혹은 법원, 행정기관 규칙에 의하여 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법원, 행정기관, 혹은 중재자에 의하여 조정으로 회부되는 경우.

(2) 조정 당사자들과 조정자가 조정 진술이 비공개 특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는 서면을 통하여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3)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자의 역할을 자청하는 개인을 조정자로 활용하는 경우,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자청하는 주체에 의하여 조정이 제공되는 경우.

(b) 이 법은 다음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단체교섭관계의 수립, 협상, 운영, 혹은 종료와 관련되는 경우.

(2) 단체교섭협약에 의하여 수립된 과정 하에서 미결 상태인, 혹은 그 과정의 일부인 분쟁과 관련되는

경우. 단,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기된 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조정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3) 해당 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4) (A) 모든 당사자들이 학생인 경우 초, 중등학교의 후원 하에, 혹은

(B) 모든 당사자들이 청소년교정기관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교정기관의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c) 당사자들이 어떠한 조정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서면으로 사전 동의하는 경우, 혹은 조정 절차의 기록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내포하는 경우, 제4~6조에서 명시하는 특권은 해당 조정 또는 동의된 일부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조정 진술이 작성되기 전 동의에 대한 실제 통보를 받지 아니한 주체가 작성한 조정 진술의 경우 제4~6조가 적용된다.

제4조(공개, 증거능력, 증거개시 금지의 특권)

(a) 제6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 진술은 (b)항에서 서술하는 특권을 가지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포기 혹은 배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증거능력, 또는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b) 조정 절차에서 다음의 특권들이 적용된다.

(1) 조정 당사자는 조정 진술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타 주체로부터 조정 진술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2) 조정자는 자신의 조정 진술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타 주체로부터 자신의 조정 진술이 공개

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3) 비당사자 참여자는 자신의 조정 진술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타 주체로부터 자신의 조정 진술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c) 다른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거나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증거 혹은 정보는 조정에서 공개 혹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불허되거나 증거개시로부터 보호받지는 아니한다.

제5조(특권의 포기 및 배제)

(a) 제4조에서 명시하는 특권은 조정의 모든 당사자들의 포기 의사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다음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정 절차 도중 서면 혹은 구두로 포기될 수 있다.

(1) 조정자의 특권에 있어서, 해당 조정자가 명백히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2) 비당사자 참여자의 특권에 있어서, 해당 비당사자 참여자가 명백히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b) 조정 절차에서 타 주체에게 불리한 조정 진술을 공개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주체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단, 이러한 특권의 배제는 불리한 입장에 처한 타 주체가 해당 조정 진술에 대한 설명 혹은 공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 국한된다.

(c) 범죄를 계획, 시도하거나 실제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혹은 진행 중인 범죄 또는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조정을 이용하는 주체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6조(특권의 예외)

(a) 다음 항목들 중 하나를 충족하는 조정 진술의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모든 합의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을 통하여 입증되는 합의에 기반한 조정 진술.

(2) [공개기록법의 참조 법령 삽입]에 근거하여 대중에 공개되는, 혹은 대중에 공개된 조정 세션 또는 대중에 공개되도록 법이 요구하는 조정 세션 도중 이루어진 조정 진술.

(3) 신체적 부상을 가하거나 폭력 범죄를 행하고자 하는 위협, 혹은 그 계획을 담은 진술.

(4) 범죄를 계획, 시도하거나 실제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혹은 진행 중인 범죄 또는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용되는 조정 진술.

(5) 조정자의 직무상 위법 혹은 과실 행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주장 또는 비난을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하여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조정 진술.

(6) (c)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 도중에 일어나는 행위를 기반으로 조정 당사자, 비당사자 참여자, 또는 당사자 대표의 직무상 위법 혹은 과실 행위에 대하여 제기되는 주장 또는 비난을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하여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조정 진술.

(7) 아동 혹은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에서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착취를 입증 또는 반증하기 위하여 요구되거나 제공되는 조정 진술. 단, [대안 A: [예를 들어 “아동 혹은 성인 보호” 문구 삽입] 사건이 법원에 의하여 조정으로 회부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대안 B: 공공기

관이 [예를 들어 “아동 혹은 성인 보호” 문구 삽입] 사건 조정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권의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법원, 행정기관, 또는 중재자가 비공개 심리 후,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 또는 증거의 지지자가 그 증거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 그 증거의 필요성이 비밀유지의 중요성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조정 진술이 다음 항목들 중 하나를 충족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조정 진술이 중범죄[혹은 경범죄]와 관련된 법원 절차에서 요구되거나 제공됨.

(2) (c)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진술이 무효화 혹은 개정을 위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에서, 또는 해당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약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호의 목적으로 요구되거나 제공됨.

(c) 조정자는 (a) (6)항 또는 (b) (2)항에 서술된 조정 진술의 증거를 제공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아니된다.

(d) 어떠한 조정 진술이 (a) 또는 (b)항에 근거하여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 진술 중 비공개의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일 부분에 대하여만 증거능력이 허용될 수 있다. (a) 또는 (b)항에 따른 증거의 허용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증거개시 또는 증거능력이 적용되는 증거 혹은 기타 조정 진술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제7조(조정자의 보고 금지)

(a) (b)항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자

는 조정과 관련하여 법원, 행정기관, 혹은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 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타 당국에 보고, 평가, 판단, 권고, 판정, 또는 기타 진술을 할 수 없다.

(b) 조정자는 다음 항목들을 공개할 수 있다.

(1) 조정의 발생 혹은 종료 여부, 합의 도달 여부, 참석자.

(2) 제6조에서 공개를 허가하는 조정 진술.

(3) 개인에 대한 학대, 방치, 유기, 또는 착취를 증명하는 조정 진술을 학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는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경우.

(c) (a)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진술은 법원, 행정기관, 혹은 조정자에 의하여 고려될 수 없다.

제8조(비밀유지)

[공개회의법 및 공개기록법에 대한 참고 법령 삽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조정 진술은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되는 범위, 혹은 이 주(州)의 기타 법이나 규칙이 명시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9조(조정자의 이해관계 충돌 공개, 배경)

(a)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 받은 개인은 조정을 수락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정 결과에 대한 재정적 혹은 개인적 이해관계, 조정 당사자 일방 혹은 미리 알 수 있는 조정 참여자와의 현재 혹은 과거의 관계를 포함하여, 합리적인 개인이 조정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알려진 사실이 있

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2) 조정 수락 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와 같이 알려진 사실을 조정 당사자들에게 공개한다.

(b) 조정자가 조정 수락 후에 (a) (1)항에 명시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c) 조정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 받은 개인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자의 자격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d) [(a) 혹은 (b)항] [(a), (b), 혹은 (g)항]을 위반하는 주체는 그 위반사실로 인하여 제4조에서 규정하는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e) (a), (b), (c), [(g)항은 판사의 역할을 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 이 법은 조정자에게 배경 혹은 직업 등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g) 조정자는 (a), (b)항에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실이 공개된 후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제10조(조정예의 참여)

변호사 혹은 당사자 일방이 지정한 기타 개인은 해당 당사자와 동행하여 조정예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정 전에 이루어지는 참여의 포기는 무효화될 수 있다.

제11조(국제상사조정)

(a) 이 조에서, “모범법”이란 2002년 6월 28일 유

엔국제무역법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었고 2002년 11월 19일 유엔총회 결의안(A/RES/57/18)에서 권고된 국제상사조정예 관한 모범법을 의미하며, “국제상사조정”이란 모범법의 제1조에 규정된 국제 조정예를 의미한다.

(b) (c), (d)항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조정이 국제상사조정인 경우 그 조정은 모범법의 지배를 받는다.

(c) 이 법의 제3조 (c)항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국제상사조정예의 전부 혹은 일부가 특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제4, 5, 6조, 그리고 제2조의 적용 가능한 정의 역시 조정예 적용되며, 모범법 제10장의 어떠한 조항도 제4, 5, 6조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d) 국제상사조정예의 당사자들이 모범법 제1조 (7)항에 근거하여 모범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제12조(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 관련)

이 법은 15 U.S.C. 7001조 이하 국내외 상거래 전자서명법을 수정, 제한, 혹은 대신한다. 그러나 이 법은 전자서명법 101조 (c)항을 수정, 제한, 혹은 대신하지 아니하며, 전자서명법 103조 (b)항에 규정된 정보의 전자적 공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적용 및 해석의 통일성)

이 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 이 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법을 제정하는 주(州)들 간 통일성을 추구할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 가능 조항)

이 법의 어떠한 조항이 효력을 잃거나, 어떠한 주

체나 상황에 대한 그 조항의 적용이 무효화되는 경우에도, 이는 이 법의 기타 조항 및 그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 조항 및 그 적용은 무효화된 조항 혹은 그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며, 그러한 목적으로 이 법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제15조(발효일)

이 법은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16조(무효화)

다음의 법 및 법의 일부는 이에 따라 무효화된다.

(1)

(2)

(3)

제17조(기존 합의 혹은 회부에의 적용)

(a) 이 법은 [이 법의 발효일]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정 회부 혹은 조정 합의에 근거한 조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b) [지연일] 당일 혹은 그 이후의 경우, 이 법은 일자에 관계 없이 조정 합의에 대하여 적용된다. 